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7
----------	------

발의연월일 : 2020. 6. 30.

발 의 자 : 장제원·홍문표·정동만
추경호·이철규·김석기
박덕흠·윤창현·지성호
조태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소음·진동관리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